감 사 원 통 보

제 목 조사개시 통보의 효력 안내 미흡

소 관 기 관 감사원

조 치 부 서 심의실

내 용

심의실은 「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」(감사원 훈령) 등 감사원 소관 법규 및 훈령 등에 대한 제정·개폐 및 조정 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다.

「감사원법」제32조의2 및「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」(감사원 훈령) 제34조 등에 따르면 감사원 각 부서가 특정 사건의 조사를 시작할 때에 조사대상자에 대한 징계(문책) 절차 및 시효 정지 등을 목적으로 조사대상자의 소속기관등에 조사개시 사실을 통보(이하 '조사개시 통보'라 한다)하도록 되어 있다.

그리고 '조사개시 통보'에 따라 발생하는 일반적인 효력은 [별표] "조사개시 통보에 따른 법령상 효력"과 같이「감사원법」,「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」(대통령 훈령) 및「정부포상 업무지침」(행정안전부) 등의 법령에 ① 징계(문책) 절차 진행금지 ② 징계(문책) 시효 정지¹⁾ ③ 의원면직 제한 ④ 포상추천 제한 등²⁾으로 규정되어 있다.

위와 같이 '조사개시 통보'에 따른 효력이 여러 법령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

¹⁾ 조사개시 통보에 따라 징계(문책)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는 경우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(1개월은 남도록) 규정

²⁾ 본문에 기술한 효과 외에도 「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」등에 '명예퇴직수당 지급제한'이 규정 되어 있으나, 조사개시 통보로 의원면직이 제한되면 명예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할 수 없으므로 생략

'조사개시 통보'를 받은 기관의 업무담당자로서는 특정 직원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더라도, '조사개시 통보'의 효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.

따라서 감사원 각 부서가 조사대상자 소속기관 등에 '조사개시 통보'를 할때 조사개시 사실과 함께 '조사개시 통보'의 효력을 안내하여 관련 업무담당자들이 '조사개시 통보'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바람직하다.

한편, 감사원이 감사결과 확정 후 처분요구 등을 해당 기관에 시행할 때에는 「감사결과의 보고 및 처리 등에 관한 요령」(감사원 예규) 제15조 제1항 [별지제6-2호]와 [별지 제6-18호]의 서식에 따라 "감사결과 후속조치 방법"3)을 첨부하여 해당 기관과 업무담당자 등이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를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.

그런데「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」제34조 [별지 예시1] "조사개시 통보문"에는 조사사항·부서·직위·이름 등 조사대상자의 기본 정보만을 통지하도록되어 있을 뿐 '조사개시 통보'에 따른 효력을 안내하는 문안이 별도로 없어4) 감사원 각 부서는 "조사개시 통보문"에 조사대상자의 기본 정보만을 기재하여 조사대상자 소속기관 등에 통지하고 있다.

이에 대하여 이번 감사기간(2019. 4. 1. ~ 4. 19.) 중 '조사개시 통보'를 받은 기관의 업무담당자가 '조사개시 통보'에 따른 후속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였는지 여부를 기존 감사원 감사결과를 통해 확인한 결과, 감사원으로부터 '조사개시

³⁾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, 재심의 청구, 조사종료 통보, 소송관리 등에 관한 절차를 안내

⁴⁾ 감사원 내부 업무시스템인 전자감사시스템(Open Audit System, OASYS)에서 작성·발송할 수 있으며, 「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」[별지 예시1] "조사개시 통보문"이 기본 서식으로 설정됨

통보'를 받고도 조사대상자를 포상대상자로 추천하는 등 '조사개시 통보'에 따른 효력에 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징계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었다.

─< 조사개시 통보의 효력에 반하여 업무를 처리한 사례5)>─

1. 조사대상자를 포상대상자로 추천

-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2016년 1월 소속직원에 대한 '조사개시 통보'받고도 같은 해 2월 조사 대상 직원을 '국민교육발전 유공자 포상대상자'로 교육부에 추천하였고
- 같은 해 6월 징계처분이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포상추천을 철회하지 않아 같은 해 7월 해당 직원 이 국무총리 표창을 수여(포상추천 업무담당자 징계 요구)

2. 조사대상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

○ 경주시청은 2014년 6월 소속직원에 대한 '조사개시 통보'를 받고도 같은 해 7월 조사 대상 직원에게 명예퇴직수당 지급(명예퇴직수당 지급 업무담당자 징계 요구)

관계부서 의견 심의실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'조사개시 통보'받은 기관의 업무담당자가 '조사개시 통보'의 효력을 정확히 파악하여 '조사개시 통보'에 따른 후속 조치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"조사개시 통보문"에 '조사개시 통보'에 따른 효력을 안내하는 문구를 넣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.

조치할 사항 심의실장은 조사대상자의 소속기관 등에 '조사개시 통보'에 따른 효력을 안내할 수 있도록 「감사사무 등 처리에 관한 규정」[별지 예시1] "조사개시 통보문" 등을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.(통보)

⁵⁾ 예시된 사례를 통해서는 업무담당자가 '조사개시 통보'의 효력을 알고도 고의로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것인지, 효력을 알지 못해서 업무를 잘못 처리한 것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으나 사전에 '조사개시 통보'의 효력을 안내하였다면 문제 발생을 미리 막을 수 있었거나 문제 발생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을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보임

[별표]

조사개시 통보에 따른 법령상 효력^{주1)}

대상자 효력 ^{주2)}	공무원	공공기관 임직원	기타 기관 임직원 (사립학교 등)
징계·문책 절차 ① 진행 금지	 감사원법(제32조의2) 국가공무원법(제83조) 지방공무원법(제73조) 군인사법(제59조의3) 	· 감사원법(제32조의2) ·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(제15조의4)	· 감사원법(제32조의2) · 사립학교법(제66조의3)
징계·문책 시효 ② 정지	 감사원법(제32조의2) 국가공무원법(제83조의2) 지방공무원법(제73조의2) 군인사법(제60조의3) 	· 감사원법(제32조의2) ·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(제16조의2)	· 감사원법(제32조의2) · 사립학교법(제66조의4)
③ 의원면직 제한	·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(제5조) · 군인사법(제35조의2) · 군무원인사법(제33조의2)	·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(제53조의3) ·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(제17조, 제32조)	· 사립학교법(제54조의5)
④ 포상추천 제한	•정부포상 업무지침	·정부포상 업무지침 ·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(제15조)	•정부포상 업무지침

주: 1. 감사원의 '조사개시 통보'에 따른 대표적인 효력과 관련 법령 등을 예시로 기재

^{2.} 각 법령에 따라 임·직원에게 각각 적용되는 경우가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